

의안번호	제779호
의결 연월일	2024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11월 13일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변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9
----------	-----

발의연월일 : 2024년 11월 13일
발의자 : 변종오, 이태훈, 노금식,
김호경, 박용규, 임영은,
황영호

1. 제안이유

친환경적 성격의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충북 탄소배출 감축과 도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시행 주체와 내용을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법제명 등을 알맞게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 내용을 추가함(안 제2조)
- 나.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5조)
- 다.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시행 주체와 내용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법제명 등을 수정함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첨부

다. 협의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도로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3. “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4. “자전거도로”란 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5.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7. “자전거보관대”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도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자동차운전자는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
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보행
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복잡한
장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행 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
및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홍보물 등을 제작·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제6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
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
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시내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자전거 이동
4.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5. 자전거 이용 관광코스 개발
6.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방지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검토하여 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담당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1. 단지 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2. 학교, 공공기관, 대형유통시설 등과의 연계 설치 방안
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 방안
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정비할 경우 자전거 도로 설치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공원, 하천, 철도역, 시내버스정류장, 공공청사, 대중교통 환승지점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다고 인정되는 자전거주차장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자전거주차장 또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자에게는 제5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시설을 설치

한 자가 유지·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10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0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2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비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4장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

제13조(자전거대여소 설치)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버스정류장, 철도역,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개인·단체 등이 자전거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5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자전거이용의 홍보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도지사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노동자와 학생 등이 통근을 하거나 통학하는 경우에는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자전거 시범직장·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하는 경우 통근·통학로에 자전거교통안전표지, 자전거 횡단도,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정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개인·단체 등이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9조(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여자 포상) ①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여자의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전거의 등록)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등록을 권장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에 등록된 자전거의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권한의 위탁) ①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시설을 조사·검사할 수 있다.

제21조의2(위탁의 취소) ①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취소일을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자전거법)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2호, 2023. 1. 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이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鋪裝)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도로관리청”이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관리청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의 정비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7조에 따른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6. 9.>

1.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 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등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등과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전문개정 2014. 1. 28.]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국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활성화계획 중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3.>

1.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의 기본방향

2.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

5. 제5조의2에 따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의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개선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와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읍·면 지역의 국도·지방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활성화계획이 시·도지사가 수립한 활성화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전문개정 2014. 1. 28.]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 28.]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11조의4(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2조(공공사업 시행자의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도로를 개설·확장·재정비하거나 택지개발을 하거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제5조와 제8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등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 28.]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전문개정 2014. 1. 28.]

제22조(자전거의 등록 등) ① 자전거를 소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의 시장에 한정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자전거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수,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관서와 자전거 등록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2017. 7. 26.>

[전문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6. 1. 27.]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전거법 시행령)**

[시행 2023. 7. 4.] [대통령령 제33614호, 2023. 7. 3., 일부개정]

제4조(활성화계획의 변경사항)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제4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 조달계획

[전문개정 2014. 4. 28.]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 7. 3.>

제5조(활성화계획의 반영)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용활성화사업”이라 한다) 추진의 우선순위 분석
2. 자전거도로망 등 자전거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3.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4.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도로 노선계획
5. 연도별 이용활성화사업의 추진계획 및 사업비 조달계획
6. 이용활성화사업의 시행방법
7. 도로의 신설·확장·재정비계획과 택지개발 또는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등의 조성사업과의 연계방안
8. 이용활성화사업의 효과 분석
9. 자전거 교통안전교육 실시 방안

[전문개정 2014. 4. 2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7. 3.>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삭제 <2017. 12. 29.>

③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8.]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4. 4. 28.]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간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1.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2.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3.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4.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 나. 기증,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매각.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의 매각의 예에 따르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자전거는 수의계약(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은 1년간 보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한다.
2. 기증

3.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의 활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분된 자전거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인 경우에는 처분과 동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28.]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1호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 유

-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과 위임근거 불일치 조항 정비,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전 대비 추가 발생 비용이 없고, 일부 추가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